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2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6일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11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홍보정책과장 마준오)

❑ 제안이유

2021년 제작된 홍보용 캐릭터 ‘새로미’에 대한 지식재산권(상표권)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전통성과 상징성을 가진 기존 캐릭터에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 지정하여 구 상징물로써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

❑ 주요내용

가. 상징물 정의 정비 및 구 상징물을 구체적으로 조항에 표기

나. 별표 개정(상징물의 종류): 리뉴얼 기본형 및 응용형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3.9.27. ~ 2023.10.17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가. 개정 취지

❍ 본 개정안은 홍보용 캐릭터 새로미에 대한 지식재산권(상표권)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기존 캐릭터에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 지정하여 구 상징물로써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

○ **안 제2조**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상징하는 「상징물」의 정의를 구의 특성과 이미지를 설정하여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 「캐릭터」와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창장이 정한 로고 등인 「사업브랜드」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음

○ **안 제3조**는 상징물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항에 표기하였음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징물의 종류)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상징물의 종류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캐릭터: 별표 2	2. 캐릭터: 새로미(별표 2)
3. 자연물: 별표 3	3. 나무: 은행나무(별표 3)
4. 사업브랜드: 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	4. 꽃: 국화(별표 3)
<신 설>	5. 새: 까치(별표 3)
<신 설>	6. 색: 초록색(별표 3)
<신 설>	7. 사업브랜드: 각 사업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.
<신 설>	8. 구기: 별표 4

다. 종합 의견

❍ 본 개정안은 구정 홍보를 위해 제작된 캐릭터 「새로미」의 상표권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 지정하여 구 상징물로써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내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붙임 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